

한국도로공사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조 (목적)

이 운영요령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시행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주관부서>라 함은 지원사업에 대한 기술검토, 개발내용의 평가,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공사의 도로교통연구원을 말한다.
2. <주관기업>이라 함은 공사와 상호계약에 의하여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3. <참여기업>이란 주관기업과 공동으로 기술개발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면서 기술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4. <위탁연구기관>이라 함은 주관기업으로부터 기술개발과제 내용의 일부를 위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 그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5. <과제책임자>라 함은 기술개발과제의 세부과제를 총괄 감독하는 자로서 주관기업에 소속을 둔 연구원을 말한다. 다만, 주관기업의 임원인 자가 선임급 이상의 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그가 과제책임자가 된다.
6. <연구원>이라 함은 기술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자로서 책임급, 선임급, 원급, 연구보조원으로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제3조 (지원대상 기술 및 지원규모)

- ① 지원사업은 도로교통 분야의 신제품 또는 신공법 개발을 통하여 현저한 경제적 성과를 얻기 위한 약 12개월 이내의 단기성 사업을 말한다.
-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된 1개 과제 당 총 기술개발비의 50%(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주관기업의 기술개발과제 소요비용 중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다만, 주관부서장은 선정과

제의 수에 따라 책정된 사업비 범위내에서 출연금액 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이 요청할 경우 수탁(특수)시험 및 기자재를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별표6]과 같다. 다만, 무상지원 금액은 당해연도 수탁(특수)시험비 기준으로 우리공사 출연금의 10% 이내로 한다.

④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은 총 기술개발비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출자하여야 한다. 다만, 납입은 계약체결시 10% 이상, 중간성과금 청구시 잔여금액으로 한다.

제4조 (사업신청서 제출)

① 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주관기업은 공모 기간내에 소정의 양식에 따른 기술개발 지원사업 신청서 및 기술(제품)개발 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의 총사업비는 제3조, 제16조 및 제17조 등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5조 (사업신청서 검토)

① 주관부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모에 따라 중소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신청기업(참여기업을 포함)의 자격, 연구인력 및 시설확보 정도.
2. 사업비 계상의 착오 유무 및 적정성 여부.
3. 신청과제가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지원하는 기술개발 지원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관련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 받은 사실의 유무.
4. 기타 주관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관부서장은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해당기업(참여기업 포함)의 현장을 실사(實査)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2항에 의한 검토결과 신청과제가 국내 개발완료, 사업화 능력이나 개발가능성 희박, 개발비의 과다한 계상, 신청기업의 과도한 부채비율이나 자본잠식 등 경영악화, 개발능력 및 준비의 부족 등 현저한 미비점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제6조 (사업계획서의 평가 및 지원업체 선정)

① 주관부서장은 신청과제의 수가 지원계획의 2배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1차 심사를 거쳐 2배수 이내로 평가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장은 사전 적격심사 후 적격판정 공모과제(기업)에 대하여 평가위원회 (이하 <평가위>라 한다)를 개최하여 기술성 및 사업성 등에 관한 평가를 거

쳐 지원업체를 선정한다.

③ 평가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평가한다.

1. 개발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의 타당성
2. 기술개발과제 추진체계
3. 주관기업(참여기업 또는 위탁연구기관 포함)의 기술개발 수행능력
4. 기술개발과제 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
5. 연구인력 및 시설의 확보정도
6.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및 기술개발 기간의 타당성
7. 기타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

④ 지원업체 선정은 [별표 3]의 평가표상 평균득점 수준이 '우수' 이상 이어야 한다.

⑤ 평가위는 사업계획서를 평가할 때 신청기업(참여기업 및 위탁연구기관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의 선정통보)

① 주관부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지원업체에게 선정 사실을 통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내용에는 응모과제명, 주관기업명, 출연금의 규모,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조건내용 등을 포함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선정 이후라도 사업계획서 내용 등이 허위로 작성되거나 동일과제가 다른 기술지원 사업에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선정의 취소 또는 과제의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 (계약의 체결)

① 계약은 공사의 사장을 대신하여 도로교통연구원장과 주관기업의 대표자가 서면으로 체결한다.

② 주관기업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선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주관부서장은 당해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주관기업은 계약체결시에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의 현금 분담액이 입금된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출연금의 교부)

- ① 주관부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주관기업에 출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② 주관부서장은 출연금을 교부할 때에 과제별 사업비의 규모, 착수시기, 추진진도, 예산을 감안하여 착수금(50%), 중간성과금(50%)으로 분할하여 교부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내용,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중간보고)

- ① 주관기업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에 명기된 개발기간 중 3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주기적으로 '중간보고서(계약서 별첨 참조)'를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장은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간보고서 제출 횟수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② 주관부서장은 주관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사업계획서와 비교 검토한 후 당해 지원사업의 추진상태 및 사업비 사용내역 등을 파악하기 위한 중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계획의 변경)

- ① 주관기업이 산업기술의 변화, 참여기업의 교체, 사업계획 내용의 변경 등으로 사업계획서 내용의 일부 또는 기술개발 사업비 비목별 금액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주관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주관부서장은 변경코자하는 내용이 당초의 기술개발과제 목표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사업비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때에는 별도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제12조 (계약의 해약)

- ① 주관부서장은 계약을 체결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정으로 인하여 주관기업이 기술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 1. 천재지변, 주관기업의 부도·폐업 등으로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 2. 다른 기술개발과제에 의하여 수행중이거나 이미 성취되어 기술개발과제를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
 - 3. 기술개발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사기 및 중복지원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 출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기술개발과제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기술개발과제 수행이 중단되어 소기의 기술개발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중도포기 포함)
 7. 기타 주관기업 등에서 중대한 사유(대표자의 신용거래불량 등)가 발생하여 기술개발과제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25조에 의한 해약사유에 해당하는 제재 및 환수조치 등을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취할 수 있다.

제13조 (사업결과 보고)

주관기업은 지원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당해 지원사업의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술개발과제 최종보고서를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업결과의 평가)

- ① 주관부서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결과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지원사업의 추진실적, 출연금의 사용실태 등에 관하여 조사 및 심사를 하여야 한다.
- 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결과를 조사 및 심사하여 개발성공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 ③ 주관부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과의 판정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 및 주관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성공과제에 대한 사후관리)

- ① 주관부서장은 성공과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되, 해당 신제품이나 신공법에 대한 우선 구매 및 적용 등 보호지원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주관부서와 주관기업은 성공과제에 대한 지적재산권 공유 및 이익균분 사항은 별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16조 (사업비의 조성)

- ① 주관기업의 기술개발과제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은 공사의 출연금과 주관기업(참여기업을 포함한다)이 부담하는 금액(이하 <기업부담금>이라 한다)으로 조성 한다.
- ② 공사는 출연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기업부담금은 현금 및 현물로 계상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은 현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참여 비율에 따른 인건비
2. 기업이 보유한 연구기자재 또는 연구시설의 사용료(임차료)
3.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견품, 시약, 및 재료비 등

제17조 (사업비의 계상방법 등)

- ① 사업비의 비목은 인건비·직접비·간접비 및 위탁연구비로 구성하되 각 비목별 계상기준 및 구성 비율은 [별표 4]와 같다.
- 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목별 적용기준으로는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과제에 대하여는 비목별 적용기준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청기업이 합당한 사유 및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8조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 ① 주관기업은 출연금과 기업부담금의 현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주관기업의 다른 사업자금과 명백히 구분,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의 수입 또는 지출은 주관기업 대표자의 책임과 발의 하에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비목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내에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원인행위가 계약기간 이전에 이루어졌거나 그 이후에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 사유를 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장은 그 사유가 당해 지원사업의 연속적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④ 주관기업은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지급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기타 필요한 경우 견적서, 청구서 또는 검사서 등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리하고 주관부서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사업비 사용에 있어 관세 등 사후에 환급 받거나 공제 받는 금액은 당해 사업비에서 제외된다.(단, 공사출연금 사용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 포함하며, 환급 받는 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비에 포함한다)
- ⑥ 개발기간 중에 발생한 예금이자 등 원금에 산입하여 간접비에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 (사업비 사용내역 보고 및 정산)

- ① 주관기업은 사업비 사용내역을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관부서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비 사용내역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거나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주관기업은 사업비 정산결과 공사출연금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주관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비의 부실관리, 출연금 잔액 미반납 등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주관기업은 제1항의 사업비 사용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증빙 서류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재산의 귀속 및 처분제한)

① 당해 지원사업의 성과 또는 출연금으로 취득한 지식재산권, 시제품, 연구자재 등의 소유권은 공사와 주관기업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② 주관기업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물에 대하여는 주관부서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이의신청)

① 주관기업은 사업계획에 대한 취소, 출연금 반환명령 등 주관부서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뜻을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자료제출 및 검사)

① 주관기업은 주관부서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사업계획서의 검토, 중간점검 및 사업결과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업(참여기업 또는 위탁연구기관을 포함한다)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소속직원을 파견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주관기업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3조 (결과의 활용)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평가된 기술개발과제 주관기업은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후로부터 3년간(상반기 최종결과 통보시 당해년도 포함) 기술개발과제 결과의 연간 활용실적을 매 익년 1월말까지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 ① 주관부서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최종 평가결과 성공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주관기업으로부터 지원금액의 10%를 기술료로 징수한다.
- ② 주관부서장은 기술료 징수시 경우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기술료 할인의 종류는 ‘평가 점수에 따른 할인’, ‘조기납부 기간에 따른 할인’ 등이며 지원여건에 따라 별도의 방침으로 정한다.
- ③ 주관부서장은 징수된 기술료 중 일부를 동 지원사업을 촉진하는 활동, 사업추진 공로자에 대한 포상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제25조 (제재 및 공사출연금 환수)

① 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당해 기술개발과제의 주관기업(대표자 및 총괄책임자), 연구책임자 등에 대하여 [별표 5]의 기준에 의해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이를 유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출연금 환수 및 기타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0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중단 또는 실패과제로 평가된 과제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약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과제 최종보고서,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사용내역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과제 결과의 연간 활용실적 등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지체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4.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정산잔액 중 출연금 지분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5.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 납부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하지 않은 경우
6. 기타 이 운영요령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여제한은 위원회의 심의결과 통보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제재중인 주관기업(대표자 및 총괄책임자) 및 연구책임자에 대해서도 참여제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6조 (지급보증서류 징구)

주관부서장은 제24조 및 제25조의 명확한 이행을 위하여 주관기업에 착수금, 중간성과금 지급전 지급보증서류를 징구할 수 있다.

제27조 (지원사업의 승계)

-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주관기업의 대표자가 당해 지원사업의 수행과정에서 기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와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기업을 양수 받은 자,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동 지원사업을 승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원사업을 승계한 자는 주관부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주관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제1항의 승계자가 당해 지원사업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해약으로 간주하며 출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8조 (비밀유지 의무)

위원회 위원, 사업계획서 평가위원, 주관부서 직원, 주관기업 임직원, 참여 연구원 등은 지원사업을 통하여 알게 된 공사 및 주관기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 (기 타)

- ① 주관부서장은 이 운영요령에서 정한 사항 또는 기술개발과제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부지침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이 운영요령은 공사의 2019년도 지원사업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위탁연구기관의 범위(제2조 제4호 관련)

1. 국립·공립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재료연구소,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초과학연구원 등)
4.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신발피혁연구원, 한국실크연구원, 다이텍연구원, 한국광기술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정보기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중소기업진흥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섬유기계연구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등)
5. 「국가표준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시험인증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연구기관
7.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8.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9.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한국섬유소재연구소, 포항산업과학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등)
10.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연구조합(고등기술연구원 등)
1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12.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각 사업에서 인정하는 기술 및 품질관련 법인 또는 단체

연구원의 직급계상 기준(제2조 제6호 관련)

소 속	책 임 급	선 임 급	원 급	연구보조원
대 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교수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임강사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사과정 재학생 또는 연구수행에서 보조원으로 반드시 필요한 연구요원
기업, 기관, 단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과정 이수자는 12년이상, 석사학위 소지자는 9년이상, 박사학위 소지자는 5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 기사자격자는 12년 기술사는 5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과정 이수자는 6년이상, 석사학위 소지자는 3년이상, 박사학위 소지자는 1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 기사자격자는 6년 기술사는 1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으로 5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을 가진 중소기업 대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은 5년이상, 전문대학 졸업자는 3년이상, 대학이상의 과정이수자는 1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 기능사는 5년, 기사자격자는 1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급, 선임급, 원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원 중 연구능력이 인정되는 자
국 · 공립 연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관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관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근무경력이 1년이상인 자, 연구사로서 근무경력이 6년 이상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사로서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직

[별표 3]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평가표

발표순서		평 가 일	2019. . .									
과 제 명												
주관기업			총사업비/지원금			백만원 / 백만원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평 가 지 표	평 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A+	A0	B+	B0	B-	C+	C0	D+	D0	E
1. 기술성 및 개발 능력 (50)	사업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동사업의 목적과 부합여부 - 기술적 수준과 목표가 적정하고 목표 달성정도를 명확히 측정가능 여부	10	9	8	7	6	5	4	3	2	1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 개발기술이 국내외 기존 기술과 비교한 연구내용 및 범위의 혁신성과 차별성	10	9	8	7	6	5	4	3	2	1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 연구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연구 단계별 연계성 및 적합성, 신청연구비 및 기간의 적정여부 등	10	9	8	7	6	5	4	3	2	1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 총괄책임자의 해당분야 기술개발 및 실용화실적, 연구팀 운영능력과 참여 인력의 역할분담, 전공, 구성의 적절성	10	9	8	7	6	5	4	3	2	1
	관련 제품 기술력의 적정성	- 지원기업의 신청과제와 관련이 있는 제품의 제작판매 실적	10	9	8	7	6	5	4	3	2	1
2.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50)	개발기술의 활용 가능성	- 개발결과의 제품생산 가능성 등	10	9	8	7	6	5	4	3	2	1
	실용화 가능성	- 개발결과의 실용화단계 진입 가능성 및 수준	10	9	8	7	6	5	4	3	2	1
	사업화계획의 적정성	- 기술시장동향 파악의 수준 및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0	9	8	7	6	5	4	3	2	1
	시장진입가능성 및 성장성	- 개발결과의 상업화 소요기간 및 난이도를 고려시 시장진입 가능성 및 시장규모에 따른 향후 성장성	10	9	8	7	6	5	4	3	2	1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 미래형 산업여부, 시장창출, 매출발생, 수입대체 및 수출효과, 수입단가 인하 효과 등	10	9	8	7	6	5	4	3	2	1
평가의견	합 계		점									

평가위원

(인)

[별표 4]

사업비의 비목별 계상기준(제17조 제1항 관련)

비 목	계 상 기 준
<p>인 건 비 (현물계상)</p> <p>(구성비율 : 총사업비의 40% 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 인건비(현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이 당해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로,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35%를 초과하지 못한다)에 따라 계상한다. ○ 외부 인건비(현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기업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참여기업 등에 소속되어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p><참고> 학사·석사·박사 과정·박사의 외부인건비 월간 적용기준(100% 참여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사과정(1,000,000원), 석사과정(1,800,000원), 박사과정(2,500,000원), 박사후 연구원(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
<p>직 접 비</p> <p>(구성비율 : 총사업비의 55% 이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주관기업 출자금으로 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가장비와 부수기자재(해당연구와 무관한 개인용/다용도 컴퓨터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 100만원 이상의 기자재는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구입전 반드시 주관부서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승인없이 구입할 경우 정산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구입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등 - 전산처리(시뮬레이션 등) 등 ○ 시작품제작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작품·시제품·파이롯 플랜트 등 제작경비 ○ 연구활동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과제관리비를 인건비의 3%범위 안에서 사용 ○ 여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개발과 관련한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로, 주관기업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경비

직 접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용비 및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개발과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등 (2%이내) ○기술정보 활동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개발과 관련한 전문가활용, 기술정보 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기술도입비 등으로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경비 또는 실 소요경비 ○신청기업 보유 기자재 및 보유재료(선택사항 : 현물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보유하고 있는 기자재와 재료에 대해 총사업비 5% 내에서 계상가능
간 접 비 (구성비율 : 총사업비의 5%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접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및 기관 공통 지원경비로 인건비와 직접비의 2%범위 안에서 <u>사용(또는 계상)</u> ○지적재산권 출원 및 임치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출원에 필요한 기본 비용 또는 기술임치 비용(2년 이내) ○연구실 안전관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사고보상에 필요한 경비로 인건비의 2%범위 안에서 <u>사용(또는 계상)</u>

참고사항

위탁연구 개발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기업이 없는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으며, 개발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로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구분한다. ○공사지원금 중 아래의 위탁연구개발비 지급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주관 기업이 현금으로 부담한다. ○인건비(현물계상) 총액과 위탁연구비 총액의 합은 총 개발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공사 지원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접비 중 재료비, 시제품 제작비, 전산처리비 등 매입부가세 발생항목 ○위탁연구개발비의 일부(공사지원금의 20% 이내) 등

※ 위 총사업비 구성은 표준으로서 소프트웨어 개발위주 과제 등 해당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위와 달리 구성해야 할 경우에는 사유 및 근거를 표시하여 주관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함

[별표 5]

참여제한 및 출연금 회수대상과 제재등급 (제12조, 제25조 관련)

가) 계약포기(해약), 중단, 실패

분류 등급	제 재 사 유	공사 출연금 환수	참여제한	
			구분	대상
1 등급	○ 공사출연금 전액을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	면제	면제	-
	○ 중단, 실패 등의 귀책사유가 주관기업(참여기업 포함)에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정부 및 공사의 기술개발정책상 중단(기개발 등)			
	○ 기술개발을 성실히 수행하였으나 기술성 및 사업성이 미흡하여 중단, 실패한 경우 - 시장 미성숙, 기술 환경 변화, 활용 불투명 등			
	○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 폐업 등 경영악화로 인해 중단, 실패되는 경우(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 충실히 이행)	면제	2년	귀책대상 기업 및 대표자
2 등급	○ 사업비 사용 내역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전액	2년	귀책대상 기업 및 대표자 및 총괄책임자
	○ 정당한 절차 없이 기술개발 내용을 누설·유출한 경우			
	○ 사업비를 사용용도 이외로 사용한 경우	전액	3년	
	○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출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연구개발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기술개발 결과가 불량하여 중단, 실패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운영요령 27조 3항의 미승계 경우 포함)			
	○ 보고서 미제출 등 제규정 위반사항의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 1등급 및 2등급의 항목 중 둘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5년까지 기술개발사업 참여를 제한

나) 기술료/회수금 미납

분류 등급	제 재 사 유		기술료/ 회수금	참여제한	
				구분	대상
1 등 급	○ 기술료 납부유예가 인정되는 경우 - 실용화 지연, 경영악화 등		유예	-	-
	○ 부도, 폐업, 파산 등 그에 준하는 상황 - 신용정보 조회결과 연체금이 납부대상액을 2배이상 상회하는 경우 - 신용정보 조회결과 연체금을 1년이상 해소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금액	3년	귀책대상 기관 및 대표자
2 등 급	○ 해당기업이 정상 운영 중인 경우	① 기업 신용도 평가결과 열위 또는 불량이고 재산조사 결과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제	3년	귀책대상 기관 및 대표자
		② 기업 신용도 평가결과 보통이상이거나 재산조사 결과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금액	2년	귀책대상 기관 및 대표자

- ※ 2등급의 경우는 1등급 제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2등급에서 기업 신용도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 재산조사 결과 및 기업현황 조사정보를 참조하여 처리할 수 있다.

[별표 6]

시험구분		시험종목(44종)	시험장비	관련규격	
토질	흙의 물리시험	함수량	건조로	KS F-2306	
		밀도	데시케이터, 건조로	KS F-2308	
골재	골재시험	알칼리골재반응	다이얼게이지, 양생용 건조로	ASTM C 1260	
		편장편 함유량	편장석자	KS F-2575	
		체가름	입도시험기	KS F-2502	
		밀도 및 흡수율	밀도측정기, 플라스크 등	KS F-2503	
	석재 및 석분시험	밀도 및 흡수율	밀도측정기, 플라스크 등	KS L-5110	
		입도	입도시험기	KS A-5101	
		압축강도(수침)	만능재료시험기	관련시방	
	압축강도(건조)	만능재료시험기	관련시방		
콘크리트	콘크리트 및 혼화제 시험	밀도	밀도측정기	ASTM E-100	
		균일성(FTIR)	FTIR 시험기	KS M-0024	
		고형분	건조로	ASTM C-494	
		기포간격계수	기포간격계수 측정기	ASTM C 457	
		염소이온 침투저항	염소이온 침투저항 시험기	ASTM C 1202	
	시멘트 콘크리트 혼합물 시험	슬럼프	슬럼프 콘	KS F-2402	
		공기함유량	공기량 시험기	KS F-2421	
		압축강도	만능재료시험기	KS F-2405	
		휨강도	만능재료시험기	KS F-2408	
		블리딩율	블리딩 시험기	관련시방	
	콘크리트 양생제 시험	보수능력	믹서, 몰드, 건조로	KS F-2406	
		건조시간	건조로	KS F-2540	
		컨시스턴시	건조로	KS F-2540	
		고형분	건조로	ASTM C-494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 시험	배합설계(골드빈)	믹서, 건조로, 다짐기	관련시방
			마샬안정도	안정도 시험기	KS F-2337
수침잔류안정도			항온수조, 안정도 시험기	관련시방	
추출함량 및 체가름			AP함량, 입도시험기	KS F-2358	
휠 트래킹			동적안정도 시험기	KS F-2374	
공용성 등급시험(PG)			PG등급 시험기	관련시방	
화공재료	염화칼슘, 제설용 소금시험	함량	건조로	ASTM D-632	
		입도	입도시험기	KS A-5101-1	
		수분함량	건조로	KS H-7101	
		불용분	건조로	KS H-7101	
부대시설	방음판 및 소음감쇄기	방음판 하중변위	H빔(125x125)	관련시방	
		감쇄기 하중변위	H빔(200x200)	관련시방	
	금속재료	인장 및 신율	만능재료시험기	KS D-3504	
충돌시험	방호울타리	노축용 지지력	로드셀, 유압실린더 등	관련시방	
특수시험	차량주행시험 (시험장비 탑재)	포장 지지력평가[차단필요]	FWD(12ton) 시험기	관련시방	
		포장면 미끄럼 저항시험	미끄럼저항 측정기	관련시방	
		노면 소음측정	소음측정기	관련시방	
		차선모바일 반사도 측정	차선반사 측정기	관련시방	